



전북 군산시 축동 2길  
27(수송동, 중앙여고)

‘꿈꾸어라 드높게, 도약하라 세계로’

# 가정통신문

중앙여고 제 2023 - 169 호

담당부서 : 학생자치부

본교무실 : 063) 465 – 160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의 교육활동에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부터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가정폭력의 뜻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 부부싸움)

## ▣ 가정폭력의 위험성

-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 번으로 절대 그치지 않고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 가정폭력은 아내를 향한 폭력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지니며,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관계를 맺는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별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 [신체 학대]   | [성적 학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li> <li>○ 발생 및 회복에 시간 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li> <li>○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li> <li>○ 담뱃불, 뜨거운 물로 인해 생긴 화상자국</li> <li>○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br/>- 겨드랑이, 필뚝허벅지 안쪽 등</li> <li>○ 어른과의 접촉 회피</li> <li>○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li> <li>○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뇨곤란, 생식기의 대상포진,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li> <li>○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li> <li>○ 질에 생긴 상처나 짙은 자국 또는 흉진</li> <li>○ 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암질</li> <li>○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한 성 지식</li> <li>○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li> <li>○ 수면장애,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li> <li>○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li> <li>○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등</li> </ul> |
| [정서 학대]   | [방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 장애, 신체발달 저하</li> <li>○ 언어 장애</li> <li>○ 원형 틸모 등</li> <li>○ 특정 물건을 계속 빼고 있거나 물어뜯음</li> <li>○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 장애</li> <li>○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 신경성 반응</li> <li>○ 극단행동, 과잉행동, 빌딩지연, 자살시도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지연, 발달 지체</li> <li>○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li> <li>○ 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li> <li>○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li> <li>○ 음식을 구걸</li> <li>○ 비행 또는 도둑질</li> <li>○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등</li> </ul>  |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 **아동학대 발견 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 보장)**
-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기타 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 ◆ 올바른 자녀 훈육법 – 아이를 애단칠 때 금기사항 5

### 1.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야단칠 이유는 잊고 쌍인 감정을 폭발하며 화를 내는 것은 아이를 애단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쌍인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만 남을 뿐 교육적 효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2. 다른 형제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아이의 심정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경쟁 심리를 자극해 아이를 잘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 3. 때리는 건 절대 금물!

아이를 때리다 보면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리고 난 후에는 아이에게도 상처를 남기지만 부모님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들쑥날쑥한 부모의 감정, 신체적 체벌에 자주 노출된 아이는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 소아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인격 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억제되지 않을 때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잠시 후 아이를 마주하면 극단적인 체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체벌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4. 방에 가두지 마세요!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방이나 화장실에 가두는 부모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는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혼내겠다는 의도로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이런 방법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서학대에 해당됩니다. ‘너 자꾸 밀 안 들으면 집 밖으로 내쫓을 거야’식의 위협적 발언 역시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공격성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감정을 억압한 아이는 훗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 5.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 아이를 애단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지금의 상황도 서러운데 이미 애단맞고 대가를 치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기보다 부모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겨 부모에게 적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아동복지법 제 25조 3항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6일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직인생략)